2023-6 세무회계경영저널 2023 개정세법 해설

2023 6 Monthly Magazine
통권 235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3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최고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주요정보]

· 기업 M&A 지원방안 (금융감독원)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 · 신뢰성 제고방안 (금융감독원)

안세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세회계법인

829-7557
829-7555

Anse, the Best Answer

eanse.com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PA 전문	1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회계감사	2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세무대리	3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재무자문	4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경영컨설팅	5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회계기장	6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창업지원	7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가업승계	8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 (Sox 서비스) · 금융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고주현 · 안수현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두환 · 고영일 · 공희성 · 권창현 · 구수홍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나경수 · 설찬수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박큰별 · 배익권 · 송형곤 · 양철성 · 유진우 · 유지윤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권일 · 임정훈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제갈원구 · 진수미 · 표정협 · 최영근 · 최영진 · 한상표 · 허근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김태현 · 이현섭 · 배문호 · 송태헌 · 최민욱 · 신민석 · 조세용 · 황준호 · 정호신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 이원구

가산디지털분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헌 · 허근 · 황창연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고경호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이원재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이승환, 이희건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 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 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6

+교육 · 훈련강의저널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종합소득신고납부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 범위와 소득공제 계산 ····· 2
· 식당 개인사업자 10억 달성 후 법인전환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의 신규 법인설립 자문 사례 ····· 3

이달의 특집

· 2023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4
·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 79

회계정보

· 기업 M&A 지원방안 (금융감독원) ····· 117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금융감독원) ····· 134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6월) ····· 144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2(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0(금)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제1기분 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일용·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종합소득신고납부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 범위와 소득공제 계산

- 안세재경저널 2023/5/31일자 통권 1625호(표지)

소득구분	대응 필요경비 열거 예시와 일정비율 소득공제방법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대응경비, 상품 · 제품 · 원재료가액, 운반보관료, 판매수수료 등, 임직원 급여, 사업용 자산 양도수입금액의 장부가액, 사업상 제세공과금, 근로복지기금, 퇴직관련부담금, 4대보험법상 부담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등, 기타 총수입금액 대응경비
근로소득	근로수입금액별 소득공제(500만원까지 70% + 1500만원까지 40% + 4500만원까지 15% + 1억원까지 5% + 1억 초과 2% ≦ 2천만원)
연금소득	① 총 연금 중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비율 ② 연금소득공제(350만원 + 700만원까지 40% + 1400만원까지 20% + 1400만원 초과 10%) ≦ 총 900만원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총액과세(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없음),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기타소득	공익법인 상금 등, 위약금, 배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 : 기타수입총액의 80%
	광업권 등 각종 산업재산권, 전자상거래 사용료 금품, 공익사업 지상권 · 지역권 등, 문예 · 미술 · 음악 · 창작물, 강연 · 출연 · 전문직의 지식기술보수 : 총액의 60%(2018년까지는 70%)
	서화 · 골동품 등 : 입금액 1억 이하는 90% + 1억 초과액은 80% (보유 10년 이상 90%)
	종교인 소득 : 2천만원까지 80% + 4천만원까지 50% + 6천만원까지 30% + 6천 초과액 20%

◉ 식당 개인사업자 10억 달성 후 법인전환과 차별화된 프랜차이즈의 신규 법인설립 자문 사례

- 안세재경저널 2023/5/31일자 통권 1625호(긴급시사해설)

개념, 구분	개인사업자 유지	법인전환, 법인설립
설립등기	주민등록으로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
법인방법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① 법인전환 ② 신규법인 설립
법인비용	추가비용 없음	법인당 3년 단위 이사 등기비 30만원 발생
출자분산	개인사업주 100% 전유	출자자본금 분산가능(배우자와 자녀 외는 명의신탁분산주의 : 증여공제 초과액은 증여세 부담)
대표급여	개인사업자 이익 전체가 대표 급여	법인이익에서 대표자 급여 비용처리 (2개법인에 골고루 급여 분산하여 부당행위 예방)
통합손익	사업장이 달라도 개인소득 통합	별도 법인이므로 이익통합 안됨
세금부담	개인사업자 1년 단위 이익 전액에 다단계누진세율 적용	법인이익에서 대표급여(다단계 누진세율) 차감 후 순이익 2억에 9%, 초과액에 19%로 과세이연가능
자금인사	개인이므로 다양한 자금, 인력조달 제한	외부차입, 투자유치, 인력채용시 유리(2개법인 유리)
세무간섭	개인사업자 매출 크면 상위랭킹으로 조사 대상	법인사업자 이면 매출랭킹 하위로 조사가능성 낮은 편임
미래전략	성장지속하면 결국 법인전환	성장후 합병, 통합, 분할의 유리한 선택

이달의 특 집

2023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관계법령]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9호) : 2022.12.31. 공포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67호) : 2023.2.28. 공포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 2023.3.20. 공포

01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법인세법 부칙 등)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시행시기) 2023.1.1.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시행시기) 2025.1.1

0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0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한도 확대 ○ (좌 동) ○ (좌 동) ○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0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서민 · 중산층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1,200만원 이하</td><td>6%</td></tr>
<tr><td>1,200만원 ~ 4,600만원 이하</td><td>15%</td></tr>
<tr><td>4,600만원 ~ 8,800만원 이하</td><td>24%</td></tr>
<tr><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td>35%</td></tr>
<tr><td>1.5억원 ~ 3억원 이하</td><td>38%</td></tr>
<tr><td>3억원 ~ 5억원 이하</td><td>40%</td></tr>
<tr><td>5억원 ~ 10억원 이하</td><td>42%</td></tr>
<tr><td>10억원 초과</td><td>45%</td></tr>
</table></td><td>□ 과세표준 조정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1,400만원 이하</td><td>6%</td></tr>
<tr><td>1,400만원 ~ 5,000만원 이하</td><td>15%</td></tr>
<tr><td>5,000만원 ~ 8,800만원 이하</td><td>24%</td></tr>
<tr><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td>35%</td></tr>
<tr><td>1.5억원 ~ 3억원 이하</td><td>38%</td></tr>
<tr><td>3억원 ~ 5억원 이하</td><td>40%</td></tr>
<tr><td>5억원 ~ 10억원 이하</td><td>42%</td></tr>
<tr><td>10억원 초과</td><td>45%</td></tr>
</table></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 Max 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Max 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1/2), 50만원</td><td>□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 66~50만원*
* (좌 동)</td></tr>
</table>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 Max 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개인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table>
<tr><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th rowspan="2">세액
공제율</th></tr>
<tr><th>50세미만</th><th>50세이상</th></tr>
<tr><td>5,500만원이하
(4,000만원)</td><td rowspan="2">700만원
(400만원)</td><td rowspan="2">900만원*
(600만원*)</td><td>15%</td></tr>
<tr><td>1.2억원 이하
(1억원)</td><td rowspan="2">12%</td></tr>
<tr><td>1.2억원 초과
(1억원)</td><td colspan="2">700만원
(300만원)</td></tr>
</table>
* 20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td><td>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table>
<tr><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th rowspan="2">세액
공제율</th></tr>
<tr><th>50세미만</th><th>50세이상</th></tr>
<tr><td>5,500만원이하
(4,500만원)</td><td colspan="2" rowspan="2">900만원
(600만원)</td><td>15%</td></tr>
<tr><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td><td>12%</td></tr>
</table>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td></tr>
</table>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이하 : 저율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좌 동)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09.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교육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 ·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가. 개정취지

○ 기부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 (좌 동) ○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1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
(소득세법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 (좌 동)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소득세법 제84조)

가. 개정취지

○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구 분	과세최저한
승마 · 경륜 · 경정 · 소싸움 · 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배당률 100배 이하 & 환급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복권 당첨금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개 정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구 분	과세최저한
승마 · 경륜 · 경정 · 소싸움 · 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좌 동)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좌 동)
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세법 제16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①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1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가. 개정취지

○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 제출주기 단축 ○ (좌 동) ○ 매월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분명 가산세 (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대비 낮은 수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상용근로소득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추 가>	□ 적용요건 보완 ○ (좌 동) ○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추 가>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024.1.1.~20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세법 제81조의11, 법인세법 제75조의7)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가산세율 :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세법 제164조)

가. 개정취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사유 중 해외이주의 근거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 해외이주 근거법령 명확화 ○ (좌 동)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좌 동)

2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좌 동) ○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 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2천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좌 동) ○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5.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 까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❶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❷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26.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가. 개정취지

○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 (좌 동)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9.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 (시행령) ① 대리기사, ② 퀵서비스, ③ 간병인, ④ 캐디, ⑤ 가사도우미, ⑥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하물운반원 ○ 중고차판매원 ○ 욕실종사원 <추 가>	▢ 제출대상업종 추가 ○ (좌 동) ○ (좌 동)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한국표준직업분류(분류코드 2869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0.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재 과세표준 구간 적용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1.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추 가>	▢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의무발행대상 확대
❶ 변호사 등 전문직 ❷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❸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좌 동)
❹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 · 소매업	○ 8개 업종 추가* * ❶백화점, ❷대형마트, ❸체인화편의점, ❹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❺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❻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❼육류 소매업, ❽자동차 중개업
❺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 3개 업종 추가* * ❶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❷주차장 운영업, ❸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❻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2개 업종 추가* * ❶통신장비 수리업, ❷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합리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계산특례 합리화 ○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 2022.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2.28. 공포

0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165조)

가. 개정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 (원칙) Max(❶, ❷) ❶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❷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 (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대상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일치 ○ (좌 동)

①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휴·폐업 중 법인	○ (좌 동)
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 법인	<삭 제>
<추 가>	④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⑤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⑥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2025.1.1. 이후 양도분(금융투자소득세)부터 적용

0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8)

가. 개정취지

○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table>
<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
<tr><td>코스피</td><td>1%</td><td rowspan="3">10억원</td></tr>
<tr><td>코스닥</td><td>2%</td></tr>
<tr><td>코넥스</td><td>4%</td></tr>
</table></td><td>□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 (좌 동)</td></tr>
</table>

○ 기타주주 합산 범위 ❶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추 가> ❷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❶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좌 동) – 혼외출생자 생부 · 생모* * 2024.1.1.부터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한정 <삭 제>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계산특례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 개정취지

○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요건) ① & ② & ③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② 5년 → 10년
③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4.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세법 제101조)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의2① 적용받은 경우	▢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④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5년 → 10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156조의3)

가. 개정취지

○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① + ②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①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 → 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일시적 1세대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 기한 연장
○ (원칙)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특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 : ① 또는 ②	○ (좌 동)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대체주택* 처분기한 : ① 또는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①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②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가. 개정취지

○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④ 2021.12.20~2024.12.31. 체결 ○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	○ (좌 동)

<추 가>	□ 특례사유 추가 ○ (좌 동)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 종전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 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 (좌 동) ○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8.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가. 개정취지

○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시가인 경우)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 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 (좌 동) – (양도가액 : 임대보증금) :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의2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부터 20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 (좌 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 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 2022.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67호) : 2023.2.28. 공포

01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의3 신설,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① (대상채권) 국채(국채법 §5①), 통화안정증권 ② (투자방법) ⅰ)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 ⅱ)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 투자 *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③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④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 ·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 ·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제17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제132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 · 절차 등 규정 ○ (승인자격) ①&②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②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 · 보유명세 등)의 보관 · 비치 의무 등 ○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 (국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이하 '신청서등')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 · 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기구 명의의 신청서등을 제출 * 법인법 §93의2, 소득법 §119의2 ○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신청서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 · 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신청서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01. ④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완화 ○ 투자설명서 등의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①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방식 합리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제7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소득세법 제57조의2 신설, 법인세법 제57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023.1.1. 시행) ○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비율(원천징수) : 시행령 규정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원천징수세율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text{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 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1)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비율(확정신고) : 시행령 규정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종합 소득세율 등 ※ 법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이익외 펀드 소득 : 1- 국내법인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 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구체적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8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2418호 제94조의2, 제111조)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접투자회사('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 금융투자소득('펀드소득') 및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투자자의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 펀드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 투자자의 펀드 보유 좌수(주식 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 $\frac{\text{펀드 납부 외국법인세액}}{\text{펀드 총좌수}}$ •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조정비율) ※ 다만 제도시행 첫해 및 신규설립 간접투자회사등은 ①~③ 적용시 A=1로 보아 계산 ①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 법인투자자 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A\{\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② 개인투자자 종합 · 금투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A\{\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종합소득세율}$ (한계세율 :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③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A\{\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종합소득세율}$ (한계세율 :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그 외 펀드소득) 1 –국내법인세율(한계세율 :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 ① 펀드가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②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Σ(다른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펀드의 다른 펀드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투자비율) ③ ① & ② 모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 ①& 에 대해 투자비율로 가중평균 ○ 외국납부세액 환급시 처리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국가에서 환급받은 경우 펀드가 국세청에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③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 (납부기한)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 (제출서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 · 제출

03.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38조의7)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등 적용 신청 ○ (신청절차) 비과세 · 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신 설>	▢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 (좌 동) ○ 신청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좌 동)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첨부 <추 가>	□ 첨부서류 추가 ○ (좌 동) – (좌 동)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①~③ 추가제출(국외투자기구 제외) * 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① 외국법인 설립정보 *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② 외국법인 사업정보 *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③ 사용료소득의 경우 :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허가 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 (좌 동)

* 외국납부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산출세액 × $\frac{\text{대응비용}}{\text{과세표준}}$ – 이월공제 불가 <신 설>	○ (좌 동)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 · 소득세액부터 적용

05.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 ○ (원칙) 사업자는 재화 · 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 ○ (예외) 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 · 용역 – 노점상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 · 용역 –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 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좌 동)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31442호 제178조의1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443호 제131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 (소득세법 §17의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이익) 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②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 집합투자기구이익 범위 조정 ○ (좌 동) ① 비적격집합투자증권(계약형) 양도로 발생한 이익 포함 <삭 제> * 202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법 §17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지분율 완화)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법인세 세율 인하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3호) : 2022.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65호) : 2023.2.28.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 2023.3.20. 공포

0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법인세법 제2조, 제76조의8)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❶ 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❷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❶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❷ (좌 동)
□ 연결자법인 추가 · 배제 ○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좌 동)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법인세법 제76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배분방법 ①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A)^{*} \times \frac{\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0\text{보다 큰 경우 한정})}{\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합계액}\ (0\text{보다 큰 경우 한정})}$ *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수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 (좌 동)

<추 가>	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A)* \times \frac{\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 / 연결수정결손금}}{\text{연결법인의 수정소득금액과 연결수정결손금 합계액}(=(A))}$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 연결자법인은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 (좌 동)
<신 설>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③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가. 개정취지

○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중소기업 : 소득의 10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60% → 8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04.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
<td>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 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일반법인>
<table>
<tr><th colspan="2">상장법인</th></tr>
<tr><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td>100%</td><td>100%</td></tr>
<tr><td>30%이상 100%미만</td><td>50%</td></tr>
<tr><td>30%미만</td><td>30%</td></tr>
<tr><th colspan="2">비상장법인</th></tr>
<tr><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td>100%</td><td>100%</td></tr>
<tr><td>50%이상 100%미만</td><td>50%</td></tr>
<tr><td>50%미만</td><td>30%</td></tr>
</table>
<지주회사>
<table>
<tr><th colspan="2">상장법인</th></tr>
<tr><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td>40%이상 100%</td><td>100%</td></tr>
<tr><td>30%이상 40%미만</td><td>90%</td></tr>
<tr><td>30%미만</td><td>80%</td></tr>
<tr><th colspan="2">비상장법인</th></tr>
<tr><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td>80%이상 100%</td><td>100%</td></tr>
<tr><td>50%이상 80%미만</td><td>90%</td></tr>
<tr><td>50%미만</td><td>80%</td></tr>
</table>
</td>
<td>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table>
<tr><th>지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
<tr><td>50%이상</td><td>100%</td></tr>
<tr><td>20%이상 50%미만</td><td>80%</td></tr>
<tr><td>20%미만</td><td>30%</td></tr>
</table>
</td>
</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05.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❶ 소득의 5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❷ 소득의 10%(2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❶ 명칭 : "특례기부금" ○ (좌 동) ❷ 명칭 : "일반기부금"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②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법인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손금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table>
<tr><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
<tr><td>100억원 이하</td><td>수입금액 × 0.3%</td></tr>
<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td></tr>
<tr><td>500억원 초과</td><td>1.1억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td></tr>
</table>
</td><td>□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좌 동)</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4.1.1.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_〉졚à」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봄

06.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법인세법 제24조)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 연구비 목적 한정)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 (법인세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과세체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 산입 사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익금 산입 사유 추가
○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등	○ (좌 동)
<추 가>	○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2023.1.1.부터 적용 의무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가. 개정취지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 · 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②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법인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가. 개정취지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대상) 보험회사 – 다만, 전환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한 보험회사는 적용 제외(법 §42의3⑤) ○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 §65②3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6-11의6 상 해약환급금준비금 : (A - B) 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20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③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법인세법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보험회사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 (전환시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 – (계산) ❶ - ❷

	❶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자산 항목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보험미수금, 미수금) 및 재보험자산 Ⓑ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기타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❷ :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회계기준 상 책임 준비금) -(Ⓒ) Ⓒ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및 보험계약자산 · 재보험계약자산 ○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④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가. 개정취지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 · 손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의 범위 ○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등 <추 가>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 (좌 동)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손비의 범위 ○ 상품 원료 매입가액, 양도자산 양도당시 장부가액, 인건비 등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 (좌 동)

<추 가>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⑤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가. 개정취지

○ IFRS17 손익 귀속시기 수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 보험료 ·보험금 등 손익귀속시기 : 현금주의 ○ (이자) 수입일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 (보험료·보험금 등) 수입일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손금 <신 설>	▢ IFRS17을 반영한 보험감독 회계기준의 귀속시기 수용 ○ (좌 동)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 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9.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제47조)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신 설>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10.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가. 개정취지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신 설>	○ (좌 동)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 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②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가. 개정취지

○ 세법과 회계간의 손익 귀속시기 정합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제공 등의 손익 귀속시기 ○ (원칙)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인도기준 선택가능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 인도기준만 적용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좌 동)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1.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 ·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법인세 세율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10%</td></tr>
<tr><td>2~200억원</td><td>20%</td></tr>
<tr><td>200~3,000억원</td><td>22%</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td><td>□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9%</td></tr>
<tr><td>2~200억원</td><td>19%</td></tr>
<tr><td>200~3,000억원</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3.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12.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세법 제63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금융회사의 예 · 적금 등 : 14% ○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 25% <신 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 ○ (좌 동)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 1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법인세법 부칙)

가. 개정취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 (대상 자산) ❶ 토지 또는 건물 ❷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❸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❹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좌 동)
□ ❹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 (시행시기) 2023.1.1.	□ 시행시기 유예 ○ 2025.1.1.

15.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공익적 성격의 혈액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추가

○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좌 동)
<추 가>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6.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위탁자 과세 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자 납세의무 대상 신탁 ○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부존재하는 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❶, ❷모두 충족)	▢ 위탁자 납세의무 합리화 ○ (좌 동) ○ ❶ 또는 ❷를 충족하는 경우
– ❶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 · 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 보유 – ❷신탁재산의 수익권 구분 설정(원본 수익권 : 위탁자, 수익 수익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7.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 개정취지

○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 · 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 (좌 동)
<추 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2023.2.28.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함

18.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을 통한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 항목 ○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추 가>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좌 동)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공익법인 ○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 등*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추 가>	□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전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20.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로 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법 §63③을 준용하여 20% 할증 적용 *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	□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좌 동)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령 §53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21.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가. 개정취지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①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22.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3)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자료 범위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작성 · 발급의무 면제 대상 ○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추 가>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24.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가. 개정취지

○ 무역거래 환경 변화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 ○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확인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3.20.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25.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금액 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산부인과 병원의 부대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취득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추가 ○ (좌 동)

<추 가> ○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의 임차 ○ 연구개발사업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산부인과 또는 조산원 운영 법인에 한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3.20.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합리화 ○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3호) : 2022.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265호) : 2023.2.28.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 2023.3.20. 공포

01. ①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① (대상채권) 국채(국채법 §5①), 통화안정증권 ② (투자방법) ⅰ)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 ⅱ)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 투자 *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③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④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 ·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 ·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제13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제179조의3)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 · 절차 등 규정 ○ (승인자격) ① & ②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②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 · 보유명세 등)의 보관 · 비치 의무 등 ○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1. ③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 (국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이하 '신청서등')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 · 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기구 명의의 신청서등을 제출 * 법인법 §93의2, 소득법 §119의2 ○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신청서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 · 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신청서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01. ④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완화 ○ 투자설명서 등의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①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73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제7항, 법인세법 제57조의2 신설, 소득세법 제57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2023.1.1. 시행) ○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 원천징수세율) – 조정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비율(원천징수) : 시행령 규정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원천징수세율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text{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1)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비율(확정신고) : 시행령 규정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종합}}{\text{소득세율 등}}$ ※ 법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이익외 펀드소득 : 1- 국내법인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구체적 계산방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32418호 제94조의2, 제1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89조의2)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접투자회사('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 금융투자소득('펀드소득') 및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투자자의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 펀드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 투자자의 펀드 보유 좌수(주식 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 $\frac{\text{펀드 납부 외국법인세액}}{\text{펀드 총좌수}}$ •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조정비율) ※ 다만 제도시행 첫해 및 신규설립 간접투자회사등은 ①~③ 적용시 A=1로 보아 계산 ①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 법인투자자 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A\{\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② 개인투자자 종합 · 금투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A\{\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종합소득세율}$ (한계세율 :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③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A\{\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종합소득세율}$ (한계세율 :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그 외 펀드소득) 1 –국내법인세율(한계세율 :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 ① 펀드가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②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Σ(다른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펀드의 다른 펀드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투자비율) ③ ① & ② 모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 ① & ②에 대해 투자비율로 가중평균 ○ 외국납부세액 환급시 처리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국가에서 환급받은 경우 펀드가 국세청에 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③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 (납부기한)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 (제출서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작성 · 제출

03.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6)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등 적용 신청 ○ (신청절차) 비과세 · 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신 설>	□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 (좌 동) ○ 신청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 · 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좌 동)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추가
○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첨부 <추 가>	○ (좌 동) – (좌 동) – 비과세 ·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①~③ 추가제출(국외투자기구 제외) * 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① 외국법인 설립정보 *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② 외국법인 사업정보 *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③ 사용료소득의 경우 :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허가 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추가제출 면제 외국법인의 범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범위 ○ 체약상대국의 정부 ○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5.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2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1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정)

가. 개정취지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❶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❷혼성금융상품*, ❸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 (익금불산입률) 95%

	□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①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 · 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 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신 설>	□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① & ②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①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20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05.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 · 분할 · 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06.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외국납부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초과 금액 손금 산입 허용 ○ (좌 동)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산출세액 × $\frac{\text{대응비용}}{\text{과세표준}}$ – 이월공제 불가 <신 설>	○ (좌 동)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 · 소득세액부터 적용

0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2항, 제3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제출 의무 ○ (제출자료) ❶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신 설> ○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제출 자료 추가 ❶(좌 동) ❷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8.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443호 제131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1442호 제178조의13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 (소득세법 §17의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이익) 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②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 집합투자기구이익 범위 조정 ○ (좌 동) ① 비적격집합투자증권(계약형) 양도로 발생한 이익 포함 <삭 제> * 202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법 §17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이달의 특 집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 ·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혜택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혜택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까지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18세이상 거주자(자녀)

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혜택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라.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요건	중소기업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2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미만)

□ 공제한도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2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3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500억원</td></tr></table>
□ 사후관리 기간
• 7년

□ 사후관리 요건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td><td>□ 적용대상 조정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공제한도 조정
<table><tr><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tr><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tr><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tr><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table>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td></tr>
</table>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중소기업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9②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이란?**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다. 상속인 요건 충족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	법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주식·출자지분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3.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

사업영위기간	공 제 금 액	
	'18.1.1. ~ '22.12.31	'23.1.1 이후
1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3년 기준)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700억원	상속 재산가액	7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6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50%(누진공제 4.6억원)
34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0억 2,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332억 6,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가업용 자산 명세
-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2.9%* / 365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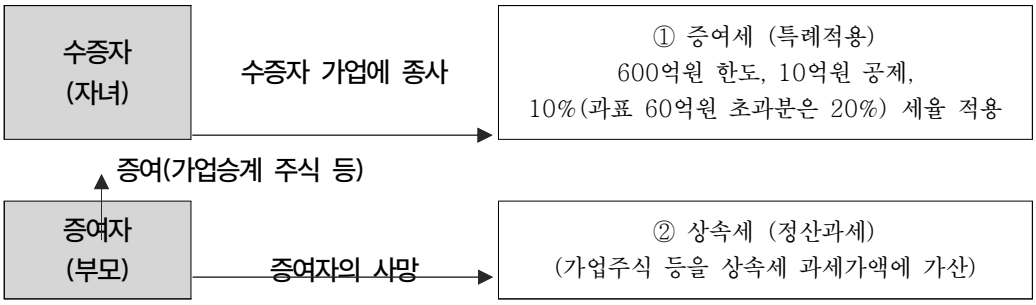

<'2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미만)	□ 적용대상 조정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적용한도	□ 적용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세율)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사후관리 ○ 7년	○ (세율)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5년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6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6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6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59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9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60억원 초과분은 20%)
295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112억원
(8억 8,5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86억 2,9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12억원

증여세 산출세액(112억원) = [(600억-70억원)×20%]+[(70억원-10억원)×10%]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74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 중소기업 : Ⅰ. 가업상속공제제도 편 참조
>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다.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 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right)$$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일반적인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공제	5천만원	10억원
세 율	10~50%	10~20%(600억원 한도)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상속재산 가산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p57 계산사례참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

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begin{array}{c}\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text{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end{array}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

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
가업상속승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 ~ 50%)	과세표준 60억 이하 : 10% 6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적용	5년 적용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o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5.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상증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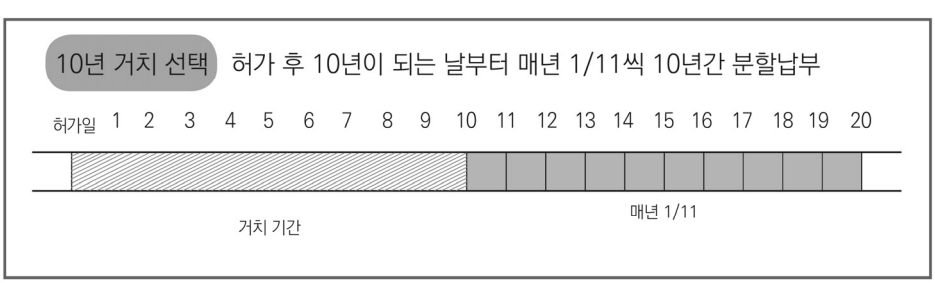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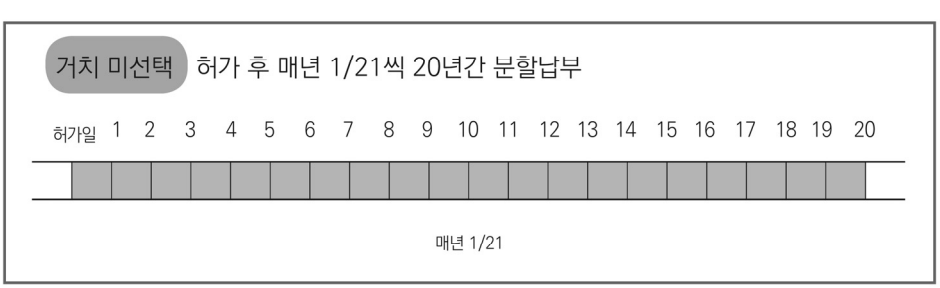

○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 · 증여분	'23.1.1 이후 상속 · 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 (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계산사례 ③ 참조).

*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 총세액} \times \frac{\text{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times \text{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 총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times \frac{\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times \text{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③ '23.3.20.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23.3.31.납기 연부연납 가산금(1.2% → 2.9%)

[연부연납 잔여세액 × '22.4.1. ~ '23.3.19.까지 일수/365 × 1.2%]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3.3.20. ~ '23.3.31.까지 일수/365 × 2.9%]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Ⅳ.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1. 납부유예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자산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

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o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o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 · 증여세 기한 후 · 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상증시행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9\%*}{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 시행령 §27의7⑫)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9\%*}{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 상당액

$$\text{취소(변경)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가업자산(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9\%*}{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장 -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1.1.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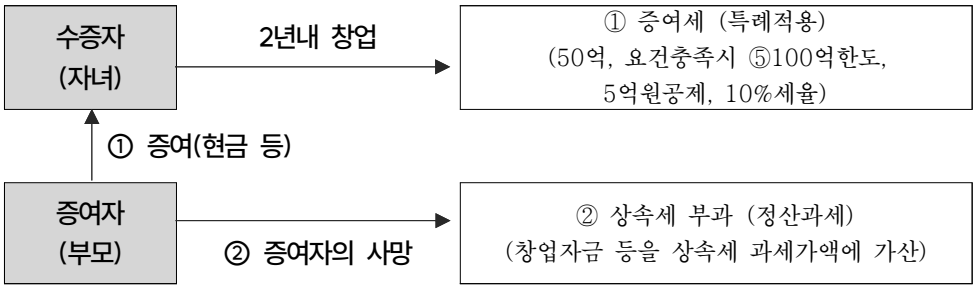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2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한도 ○ 3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 창업요건 추가(신설)	□ 적용한도 조정 ○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 30% 이하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일부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나.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다.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text{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times \frac{3}{1,000}$$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증여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50(10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10%(20%)
사후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0.3%	-
	증여세 추징 (이자 상당액 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7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7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 * 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7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재차증여재산가산배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 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가.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나.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다.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

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기업 M&A 지원방안

- 금융감독원 -

Ⅰ. 검토 배경

□ 기업 인수·합병(이하 'M&A')는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

① 규모·범위의 경제 실현, 재무적 위험 분산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

② 신기술·인적 자원·고객군 확보 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및 사업 다각화 등 촉진

③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 사업부문·좌초자산* 등은 정리하되, 유효한 자산·기술·아이디어의 사장(死藏) 방지

* 투자된 자산으로서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더는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

④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생태계 활성화 유도

□ 최근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M&A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① 최근 금리 인상 기조,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 운영 효율화 및 체질 개선 긴요

②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산업간 융복합(big blur)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 경쟁 심화

③ 글로벌 공급망 충격·재편에 대응하여 기업의 적응력·회복력 확보 필요성 증대

□ 정부는 M&A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 펀드 조성 등 M&A 매수여력 확충, 세제·금융지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

* 기업인수 목적의 PEF제도 도입('04.12월), 부처합동 M&A 활성화방안('14.3월), 삼각분할합병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시행('16.3월) 등

○ 이에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 시현

* 국내 M&A 규모(조원) : ('13) 49.1 ('15) 94.9 ('17) 81.6 ('19) 141.9 ('21) 134.1

□ 다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M&A 시장은 침체 조짐

○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고,

○ 최근 자금조달 여건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 M&A 규모 : [국제] ('21) $3.2조 → ('22) $1.4조 [국내] ('21) 134.1조원 → ('22) 78.7조원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M&A 지원이 긴요한 시점

○ M&A 시장이 침체될 경우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제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우려

○ 진입-퇴출이 원활하여 도전과 창의 등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역동적인 생태구조를 구축할 필요

⇨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M&A 지원방안을 강구

참고 1 - 글로벌 M&A 트렌드 변화

◈ 기존에는 주로 경영 효율성 증대, 시장지배력 확대 등 목적에서 기술 혁신, 세계화 대응 등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

* "The handbook of M&A"(Oxford University Press) 등 참조

1 1차 Wave (1897~1903)

○ 독과점 규제(antitrust)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지배력 강화, 원가 절감 등을 위한 M&A 증가

2 2차 Wave (1920~1929)

○ 세계1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 회복기에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위한 기업간 M&A 증가

○ 독과점 규제 강화에 따라 대규모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M&A 확대

3 3차 Wave (1960~70년대)

○ 대규모 기업집단이 사업 다각화* 등 목적으로 다양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증가 (“conglomerate merger wave”)

* 독과점 규제는 주로 동일 산업군 내 M&A 활동을 제약

4 4차 Wave (1980년대)

○ 전세계적인 기업규제 완화 기조 등 흐름에 따라 국제적 M&A(cross-border M&A) 증가 등 기업 M&A 시장 활성화

5 5차 Wave (1990년대)

○ 세계화, 기술격변 등 변화에 따른 M&A 등 확대

6 6차 Wave ('00 이후)

○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 사모펀드 발달,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제적 M&A 등 확대

Ⅱ. 기업 M&A 시장 동향

1. 해외 M&A 시장 동향

□ 거래규모는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성장 추세를 보였으나, '22년에는 긴축기조 · 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

○ '10년 1.7조달러에서 '21년 3.2조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에는 1.4조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56.9% 감소

□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재무적투자자(SPAC)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의 영향력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

□ 산업별로는 기술(IT),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M&A가 발생

○ 이러한 M&A의 주요 유인으로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주로 지적됨

□ 특히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ESG Deal')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2. 국내 M&A 시장 동향

□ 거래규모는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중 거래규모 하락

□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는 지속 확대 → PE가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

□ 산업별로는 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M&A 발생

○ '22년에는 기술·미디어·통신(28%), 제조(22%), 소비재(17%) 順

○ 향후에도 미래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에너지, ESG, 바이오 등) 중심으로 M&A 수요 지속 전망

□ 국경간 거래(cross-border M&A)의 경우, 대형 딜 발생여부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

◇ (평가) 최근 M&A 시장 위축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M&A 지원 필요

⇨ M&A 저해 요인을 분석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참고 2. 국내 업종별 M&A 주요 유인

□ 빅테크 등장,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 산업전환, 친환경 등 ESG 추세 등 다양한 산업별 M&A 유인이 지속

	주요 유인	세부 내용
금융	금융권 내실화 및 빅테크의 금융사 M&A	▸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금융지주 M&A 이후 안정화로 M&A 동력 약화 ▸ 일부 금융지주의 증권사·보험사 인수 가능성 ▸ M&A를 통한 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 일부 중소형 증권사·보험사 중심의 매물화
소비재	온라인 플랫폼 구축·선점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시장의 성장에 M&A를 통한 대응 ▸ 소비재 기업의 중소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 M&A ▸ 온라인 및 플랫폼 기반으로의 구조변화에 필요한 투자금 조달원으로서 PE의 역할 부각

제조 및 자동차	ESG 및 산업전환	▸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의 M&A ▸ ESG 관련 문제 포트폴리오의 정리 ▸ 대기업그룹의 비핵심사업 구조조정 M&A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관련 포트폴리오 재편 ▸ 전기차,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성장분야의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M&A
화학 및 에너지	친환경 대체에너지 분야 진출	▸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진출 ▸ 대기업의 친환경 포트폴리오로의 재편을 위한 탄소집약적 자산 매각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인수 ▸ PE의 투자 활동이 두드러진 분야
제약 및 의료	융복합 사업 추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헬스케어 부문의 소비재 산업화 트렌드로 인한 Beauty와 Health의 융복합 서비스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세성 극복 ▸ 코로나19 수혜 바이오기업의 현금 유동성
기술, 미디어 및 통신	플랫폼 가속화 및 신기술 영역의 성장	▸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미래형 플랫폼 선점 ▸ 보유현금이 풍부한 유니콘 기업의 지속적 M&A ▸ 글로벌화로 인한 국경간 M&A ▸ 기술 플랫폼의 선점 투자

Ⅲ. 기업 M&A 저해 요인

1 중층적 규제로 인한 M&A 시장 참여 제약

○ M&A는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어 중층적 규제체계가 적용되는 문제(PE 규제 + 기업 등 SI 규제)

○ 또한, 일부 시장 실패 사례*로 인해 규제 완화에 미온적

* 사모펀드 사태 이후 PEF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답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로 벤처투자 관련 규제완화에 미온적 태도 등

2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

○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사업 재편을 지원중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

*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3차례 조성('18년~) → 총 4.9조원 약정, 100개 기업에 3.8조원 투자

3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재

○ (해외 진출 대기업) 코로나 위기 이후 사업구조의 전환,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산업 경제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M&A(Cross-border M&A)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 M&A를 통한 혁신과 성장(scale-up)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

4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필요성

○ 합병가액 산정과정에서 상장기업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사례가 자주 발생

- 시가 중심의 경직적 합병비율 산정방식과 함께 합병 공시, 외부평가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Ⅳ. 기업 M&A 지원방안

◇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 추진

ㅇ 이를 위해 1규제 개혁, 2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3전략적 M&A 지원, 4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추진

주요과제

M&A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 제고

규제 개혁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② 분할·분할합병시 CB·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구조 조정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②-1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추진중) 시점 유예 ②-2 의무공개매수(추진중)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산업 재편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①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②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를 위한 M&A 지원 ③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M&A 지원
인프라 개선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②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③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④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 기업지배권 획득·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상장회사등의 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33)

○ (현행) 공개매수 신고단계에서 자금확보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예금잔고 등 자금'보유'만 인정하고 대출확약 등은 未인정

*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146④4.)

– 공개매수자는 실제 자금지출 시기보다 미리(공개매수기간, 20~60일)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회비용 부담

※ 공개매수시 매수예정자금 확보 관련 미국 사례
- 공개매수자가 자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는 명시적인 제약은 없음
- 실무적으로는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확약(통상 equity commitment letter 형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선)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 인수금융이 보편화되어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기간 중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 LP의 경우 LP의 자금조달능력의 확인이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 (필요조치) 실무안내서(기업공시실무안내) 개정 ('23.4.1일 旣시행)
* 금융위 보도자료('23.3.28일, 「공개매수자금 확보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참고

□ 분할·분할합병시 CB · BW·WR 등 전환 처리절차 간소화

○ (현행) 분할·분할합병시 기존 '주식'의 일부를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주정보를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

* 주식 발행인의 요청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에 소유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좌관리기관은 지체없이 통보(전자증권법 제37조)

– 그러나, CB·BW·WR 등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정보를 받을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등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 중

※ 회사 분할시 기존 주주에 대한 처리 절차

- 주식의 경우, 기존 주주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주식 일부를 전환 (기존 A 주식 일부를 말소하고 분할된 회사 B 주식을 신규배정)
- 다만, CB·BW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존속회사 및 분할된 회사는 직접 증권사로부터 수기로 투자자정보를 받아 처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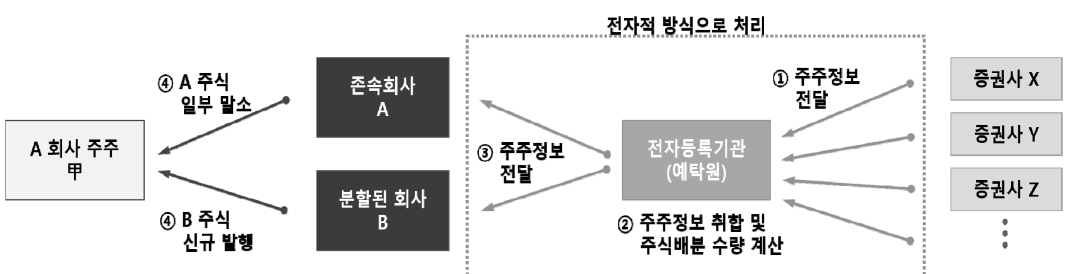

※ [참고] 두산인프라코어-두산중공업 분할합병 사례

-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자부문'이 '두산중공업'과 분할합병됨에 따라, 기존 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증권(WR)의 배분이 문제가 됨
- 이에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은 각 증권사 등으로부터 WR 투자자 정보를 받아 투자자별 WR 배분규모 계산 등을 수행
- 증권사→회사로의 투자자 정보 제공, 투자자별 WR 배분 등 업무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당한 비용투입 필요

⇨ (개선) 분할·분할합병시 CB·BW 등도 (일반 주식과 같이)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필요조치) 전자증권법 개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 (현행) 종투사*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음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시 금융위가 지정하는 증권사(現 9개사)

– 이와 관련하여, 일반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와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추가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부여 중

– 다만,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

⇨ (개선)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종투사의 대출 여력 확대

* (예) M&A 이후 3년 내 리파이낸싱 대출은 대출 전액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M&A 이후 3~5년중 리파이낸싱 대출은 대출의 50%를 적용대상으로 인정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 (현황) '18년 이후 기업구조혁신펀드를 3차례 조성(총 4.9조원 약정, 3.7조원 투자) → 이 중 경영권 인수 투자는 1.5조원(30.6%)

⇨ (개선) ①'23년 1조원 추가 조성('23~'27년 5년간 총 4조원 목표)하고, ②추가 조성분부터는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

① 구조조정·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 제공

② 캠코의 자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자산매입후 재임대, DIP* 등)과 펀드 투자를 연계하여 피투자기업의 정상화 가능성 제고

* Debtor In Possession.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회생기업에 신규자금 대출, 보증

☞ (필요조치)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조성 및 투자 개시
* 모펀드 출자기관 업무협약식(4.11.),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5.2.)

□ 의무공개매수제도(추진중)의 합리적 조정

○ (현행)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 중 ('22.12.21일 旣발표)

– 다만, 동 제도가 기업 구조조정 등 신속·효율적인 M&A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 존재

* '97.1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舊 증권거래법)되었으나,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 등에 따라 1년 만에 폐지

※ [참고]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요

- (취지)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
- (요건)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가격)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 적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물량) 총 50%+1주 이상 매수 의무를 부과 (경영권 변경 지분 포함)

⇨ (개선①)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업이 선행매수 등으로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 일정규모 이상 회사가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30일 내 공정위에 신고 → 공정위는 30일(필요시 90일 연장) 내 결과 통지

– 다만,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

* 공정위는 의무공개매수로 추가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 가능

– 이를 감안하여,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부담 경감

* (예) 기업이 공정위의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심사결과 통지 이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전제)

⇨ (개선②)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예) 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법규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른 매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주식의 매수 등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전제)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 강화

□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❶ (융자)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기술기업 인수①, 공급망 리스크 완화 및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형 기업인수② 등 지원

※ [참고] 기존 정책금융 지원 사례

산업은행	• 에너지기업 S사의 美나스닥 상장법인 P사* 지분 인수를 위한 금융주선 및 참여(총 3억불, 산은 1.2억불 공급) * 차량용 연료전지, 액화수소 플랜트 등 관련 핵심기술 보유 ⇨ 액화수소 플랜트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
기업은행	• 반도체 소부장 전문기업 W사의 일본 C사* 인수를 위한 인수금융주선 및 참여 (총 3.3억불, 기은 0.3억불 공급) * 반도체소재인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생산기술 보유 ⇨ 반도체 소부장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수출입은행	• 반도체기업 S사의 메모리반도체 부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 종합반도체 기업 I사 NAND 사업부 인수금융 참여(총 70억불, 수은 7억불 공급) ⇨ 메모리반도체 시장 지배력 확대

❷ (투자)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특화된 M&A 전문 펀드운용사 Pool을 관리(기은)

❸ (자문·컨설팅) 국내기업의 인수작업 진행이 용이하도록, 시장조사·해외네트워크 연결·인수전략 설계 등 종합자문*(산은)

* Cross-Border M&A 전담부서(본점) 및 해외데스크(홍콩) 운영

□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 지원

❶ (융자)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신설 (0.3조원, 기은)

※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개요

- 벤처·중소기업의 소규모 M&A(300억 이하) 성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은행이 마중물 융자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입 유도
  * 민간금융기관 대비 저수익으로 인수금융 대출 제공
- 기술력·성장파급효과 등 시너지효과가 큰 Deal을 중심으로 별도 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여신승인 절차 수행

❷ (투자) 중소기업 M&A 전용펀드(기은, `23년중 0.1조원) 신설 및 혁신성장펀드 내 성장지

원펀드(재정, `23년중 1.5조원 조성) 운영

- M&A 체결에 필요한 모험자본* 제공을 통해 벤처·중소기업간 M&A를 통한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예)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신주인수 등), SPC 등 인수금융기구에 투자자(Equity Holder)로 참여 등

❸ (자문·컨설팅) 벤처·중소기업이 성장전략으로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산·기은)

1 벤처·중소기업 전용 M&A 중개·주선 프로그램 (기은)
- (주요대상) 신사업 진출, 규모 확장,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기업 발굴부터 M&A 성사까지 M&A 全과정* 지원

* ①(기업 발굴) 영업점 등을 통해 M&A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Pool 관리
②(중개·주선)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중개 및 중기 특화 자문 제공
③(성사 지원) 기업 간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지원

2 성장단계별 M&A 컨설팅 프로그램 (산은)
- (NextONE) 초기 벤처기업 중 거래은행·VC 등이 선정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방안 등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NextSTEP) 사업안정화 단계의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 M&A 활용 스케일업 방안, 후속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M&A 지원

❶ (사업재편)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 등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 등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제공(산은, 0.4조원)

※ 사업재편 Value-up Blind 펀드 (산은)
- (조성규모) 0.4조원 목표
- (출자자) 산업은행 및 자회사(60%) + 민간금융기관(40%)
- (지원내용) 선제적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인수, 재무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형태로 공급

❷ (재도약 지원) 취약기업의 원활한 재도약을 위해 PEF, 전략적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해당기업 인수한 후 재기지원(산·기은)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 합병 공시강화, 외부평가기관 규율 마련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M&A 선진화 기반 마련

□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 (현행)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 중

– 다만, 합병일정, 합병비율 등 기본 사항만 간략히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

⇨ (개선)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

* 합병 추진경위, 합병추진의 타당성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 등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5), 증발공 규정(§4-5) 등 개정

□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 (현행)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제3자*의 외부평가 의무화

*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주로 회계법인이 담당)

※ 제3자의 외부평가 의무대상
① 상장법인-상장법인 간 합병 : 원칙적으로 외부평가 대상 아님
- 다만, (i) 합병가액이 기준주가*의 ±10% 초과, (ii) 합병가액을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평균)로 산정, (iii)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외부평가 대상
* 과거 1개월, 1주일, 직전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
②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 원칙적으로 외부평가 대상
- 다만, (i) 코넥스 상장법인, (ii)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 미발행시 제외

– 다만,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이해상충*, 법 준수를 위한 소극적 의견 제시 등 문제 지적

* (예) 평가기관이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적정성을 평가,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외부평가 의견 제시

⇨ (개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규율 마련

※ 제3자 외부평가기관 행위규율 (예시)
①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자의 외부평가 수행을 금지
② 외부평가보고서에 합병가액 산정방법, 주요 가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구
③ 외부평가 수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업무수행 절차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매뉴얼(가칭 '외부평가업무준칙') 마련을 의무화
④ 지배주주가 동일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토록 의무화 검토
* 양사간 상호견제가 어려워 지배주주의 이해에 치우진 외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5), 증발공 규정(§5-14) 등 개정

□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 중

※ 합병가액 산정방법
① 상장법인 : 시가(기준주가) 원칙
- (기산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
- (할인·할증) 계열사간 합병시 ±10%, 비계열사간 합병시 ±30% 내 할인·할증 가능
② 비상장법인 : 본질가치 원칙
- (산정방식)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미래수익흐름을 현재가치화)를 1:1.5로 가중평균

– 다만, 법률상 경직적인 산정방법으로 인해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 합병 당사자간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합병가액 결정을 제한함에 따라 M&A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

⇨ (개선)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중장기 검토

○ 비계열사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 합병종류별 비중(%): (계열사간) 83.2 (비계열사간) 16.8 (→SPAC합병이 13.8)

–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 미, EU, 일본 등은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공시 관행 하에서
합병가액은 당사자들 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

※ 관련 고려사항
•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는 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자의적 산정이 아닌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
• 규제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

○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일반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5), 증발공 규정(§5-13) 등 개정

□ 상장-비상장법인 간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

※ 우회상장 심사제도 개요
- (우회상장 개념) 상장-비상장법인 간 M&A를 통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사업 등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 발생
- (우회상장 심사대상) ①비상장법인의 자산, 자본, 매출 중 2개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크거나, ②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
- (우회상장 심사요건) 외형요건(자본규모 등), 질적요건(재무·경영안정성 등)
- (보호예수)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은 합병을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 취득시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부담 (※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아닌 합병에도 적용)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

○ (현행) 코스닥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장과 달리 간이합병*은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

* ①소멸법인 총주주 동의시 또는 ②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주식 90% 이상 소유시

– 소수의 주주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주주 동의'로 손쉽게 간이합병으로 분류 → 우회상장 심사를 용이하게 회피한다는 지적

⇨ (개선) 코스닥 시장도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

☞ (필요조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33) 등 개정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 고려]

○ (현행) 자산·자본·매출은 작지만 미래성장성이 큰 비상장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회상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상장요건 미심사* → 상장법인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

* 특히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부분 최대주주 변경이 없어 미심사하는 경우 다수

⇨ (개선)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외부평가 기준)가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에는 우회상장 심사대상으로 포함

☞ (필요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Ⅴ. 향후 추진계획

□ M&A 지원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입법노력 지속

□ 금번 발표과제 외에, 법무부와 협업하여 기업 M&A 지원방안 관련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별도로 발표('23.下)

참고 1.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1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실무안내서 개정	既조치 (4.1. 시행)
2 분할·분할합병시 CB 등 전환처리 간소화	전자증권법 개정	'23.上~
3 종투사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23.上~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1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조성 및 투자 개시	~'23년
2-1 의무공개매수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자본법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후
2-2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	자본법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후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1 국가전략산업 유망기업의 해외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조성·운영	'23.上~
2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 지원	프로그램 조성·운영	'23.上~
3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조성·운영	'23.上~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1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자본법 시행령 개정	~'23년
2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	~'23년
3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자본법 시행령 개정	~'23년
4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자본법 시행령, 거래소 규정 개정	~'23년

참고 2.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합병에 대한 규율 현황

□ (공시) 합병등*(이하 '합병')의 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제출 및 공시

*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또는 합병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제출

* 이사회의사록, 합병계약서, 외부평가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

○ (증권신고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는 행위가 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외부평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제3자의 외부평가를 의무화

○ 일반적으로 '상장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의무가 없으며*, '상장 · 비상장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의무가 존재

* (예외) ①합병가액이 기준주가의 ±10%를 초과, ②기준주가 산정 불능 사유로 본질가치로 평가, ③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의무 有

○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투자업자에 한해 평가업무 수행 가능 (단, 평가대상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등의 경우 업무수행 금지)

□ (합병가액)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 중

○ (상장사간 합병) 기준주가*에 따라 산정하되, 기준주가의 일정 범위(일반±30%, 계열사간 ±10%) 내에서 조정 가능

*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중 빠른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1주일, 직전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각각 가중산술평균한 후 산술평균

○ (상장·비상장사간 합병) 상장사는 '기준주가'(일반±30%, 계열사간 ±10%), 비상장사는 '본질가치'로 산정

– (상장사)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 시 자산가치 적용 가능

– (비상장사)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법규에서 정한 일정 항목을 가감

**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적용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 -

Ⅰ. 추진 배경

□ ESG 평가(Ratings)란 기업의 ESG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IOSCO)

○ 최근 ESG 투자 활성화, 평가등급의 활용도* 증가 등에 따라 투자자의 ESG 평가 의존도 및 평가기관의 역할 확대** 추세

* ①ESG 지수(index) 산출, ②연기금의 ESG 책임투자시 기초자료로 활용, ③ESG 펀드 자산종목 구성 등

** 국제적으로 약 160개의 ESG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가 존재하며(KPMG), 글로벌 ESG 데이터 사업 규모는 '22년 기준 13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Opimas)

○ 다만, 평가방법론의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우려 등은 국내외 ESG 평가시장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 ESG 평가의 중요성 제고 및 문제점 지적에 따라 국제적으로 ESG 평가시장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중

○ IOSCO, OECD 등은 평가기관에 투명성 강화, 이해상충 관리 등을 요구하는 한편, 감독당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

○ EU, 영국 등도 평가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발표

□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ESG 평가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ESG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SG 평가시장에 대한 우려도 확대

➡ ESG 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월) 등

Ⅱ. ESG 평가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ESG 평가시장 현황

(1) 해외 현황

□ MSCI, S&P, Sustanalytics, ISS, CDP 등이 글로벌 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성장

○ ESG 등급산출 외 ESG 데이터 판매, ESG 지수 산출, 자문, 투자 솔루션 제공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창출

□ 시장규모는 '22년 기준 13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Opimas), '25년에는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증가 전망(UBS)

○ 특히, 최근 ESG 지수 산출, ESG 펀드 자산종목 편입 등 ESG 투자시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평가시장 확대에 영향

(2) 국내 현황

□ 한국ESG기준원(舊 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舊 대신경제연) 3개社가 대표적 평가기관

○ 언론사, CB사, 데이터 분석업체에서도 평가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최근 회계법인, 신평사, 법무법인도 서비스 준비중

□ 상장사·대기업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공급망 ESG 관리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요도 증가

○ 평가사별로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거나 기관투자자,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평가업무 수행

2. ESG 평가시장의 문제점

◇ 주요 문제점으로 (1)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2)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3)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등이 제기됨

(1)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 최근 평가사들 간 평가결과의 차이*로 인해 기업들의 ESG 평가 대응부담 가중 및 평가등급의 투자지표로서의 의미 부족 지적

* 국내 두 평가기관(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에서 839개 기업 대상으로 부여한 ESG 종합등급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61 수준으로 나타남

○ 상이한 평가결과는 '엇갈린 신호'(mixed signal)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 개선의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

○ 다만, 평가등급의 차이는 평가지표, 가중치 등 평가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존재*

*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Florian Berg et al, 2020)

□ 아울러, 최근 ESG 평가시장 확대에 따라 평가체계의 전문성 부족, ESG 워싱(ESG washing) 등의 문제도 발생

○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ESG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 ESG 평가기관의 소유구조*, 평가대상회사에 평가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겸임 등 지배구조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

* (예) ESG 평가기관의 지배주주가 법인/투자자인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대상회사에 지배주주의 계열회사 또는 투자대상회사가 포함될 수 있음

□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 컨설팅, 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이해충돌 등 발생 우려

〈 해외평가기관들의 이해충돌 방지 사례 〉

- (지배구조) ISS는 이전 지배주주인 사모펀드 관련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운영하여 해당 사모펀드 투자 회사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해상충 가능성 차단
-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의 분리) CDP는 기술팀과 평가팀을 분리하고 ESG 평가업무를 별도 기관에 아웃소싱하여 수행

(3)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 평가항목, 평가과정 등 평가방법이나 평가체계에 대한 불충한 정보공개가 국내외 평가기관에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특히,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 시장 성숙도가 낮고 경쟁이 심하지 않아 해외평가기관에 비해 정보공개 수준이 낮다는 평가

□ 평가체계의 불투명성은 평가대상기업 등 정보이용자의 평가 결과 수용도를 낮추고 평가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하

* 국내 ESG 평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21년, 자본연): ❶평가방법론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기업이 제공한 정보와 평가 결과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불명확하다, ❷합리적 평가방법론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 아울러, 평가대상회사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 실제 투자에 활용하기에도 제한

※ 신용평가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기관들은 신용평가방법론을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 등은 공시되고 있음

Ⅲ. 국제 논의 동향

□ (IOSCO) 규제당국, 평가기관 등에 대한 10대 권고안* 발표 ☞ 참고 1

* 「ESG Ratings and Data Product Providers Final Report」('21.11월, IOSCO)

○ ESG 평가기관의 ESG 평가방법론 공개, 독립적인 의사결정, 비공개정보의 기밀 유지 등에 대해 권고

□ (OECD)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검토 중

○ ESG 평가기관, 지수제공자 등의 이해상충 최소화 필요성을 원칙에 추가('23.9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 예정)

□ (EU) 역내 ESG 평가 및 데이터 관련 시장 현황을 조사*

* 「Outcome of ESMA Call for Evidence on Market Characteristics of ESG Rating and Data Providers in the EU」(ESMA, '22.6월)

○ 약 35%의 평가기관이 금융규제·감독*을 받고 있으며, ESG 평가 · 데이터를 EU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평가

* ESG 평가기관으로서 규제가 아닌 금융기관(예: 신용평가사)으로서 규제를 의미

□ (일본) 금융청은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발표* ☞ 참고 2

* 「The Code of Conduct for ESG Evaluation and Data Providers」(FSA(日), '22.12)

○ 행동규범은 이해충돌 관리, 투명성 보장, 비밀 유지, 인적자원 개발 등 6개 원칙 및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영국) FCA는 이해충돌 관리, 투명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ESG 데이터 및 등급 제공기관의 행동규범 마련 계획*을 발표('22.11월)

* 행동규범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22.末)을 거쳐 '23.上 마련 예정

□ (인도) ESG 평가기관 '인가제*'를 도입('22.1월)하고 기관투자자, ESG 지수 산출기관 등은 인가받은 평가기관의 등급만 사용 가능

* 순자산 규모, 내부조직 운용규정, 전문인력 등으로 인가요건 부과

Ⅳ.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 (목적) 평가지표 선정 등 구체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Best Practice 제시

◇ (성격) 각 기관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

◇ (수준) 非재무정보를 평가하는 ESG 평가의 특성, 국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제시

◇ (구성) 총 6개 章*, 21개 條文

* ❶총칙 - ❷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❸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❹평가체계의 공개 - ❺이해상충의 관리 - ❻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제1장 총칙

□ (목적) (1)ESG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2)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며 (3)정보이용자와 투자자 보호 강화

○ 이를 위해 ESG 평가기관 및 그 임직원이 ESG 평가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절차 및 기준을 제시

□ (용어 정의) 가이던스 규율 대상인 'ESG 평가'의 용어* 명확화

* 기업 등의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ratings), 점수(scores), 순위(rankings) 등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적용 대상) ESG 평가기관 및 임직원에 적용하고,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

□ (적용 방식) 평가기관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

제2장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 포함할 것을 제시

□ 준법감시인의 지정 및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운영 권고

□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 마련

제3장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원천데이터의 범위·수집방법의 공개 및 수집절차의 효율화

○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기초자료인 원천데이터(raw data)의 범위, 수집방법, 추정방법론 등 공개

* (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기업공시자료, 미디어자료, 감독기구·지자체 공시, 자사 홈페이지 등 공시데이터

□ 평가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를 금

지

□ 평가시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관리체계 수립·문서화 · 공개

제4장 평가체계의 공개

□ ESG 평가방법론*의 공개 및 변경시 변경사항의 공개

* (예) 원천데이터의 수집, 평가지표, 가중치의 설정 등

□ 기업별 ESG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의 공개

* (예) 기업별 ESG 등급(ratings), ESG 점수(scores), ESG 순위(rankings) 등 ESG 평가의 결과물

□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및 정보공개 방식의 접근성 확보

제5장 이해상충의 관리

□ 평가업무 수행시 독립성·공정성 확보의 일반원칙 및 이해상충 발생 우려시 회피, 관련사실의 공개 등 노력의무 부과

□ ESG 평가업무 및 평가전문인력과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의 분리

□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 및 운영

□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

제6장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 금지

* (예)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ESG 평가기관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

□ 평가등급 확정 前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범위·내용 등 통보,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추

가자료 제출, 설명 기회 부여 등 노력

Ⅴ. 향후 계획

(1단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운영('23~24년)

□ (규율방식) 'ESG평가기관협의체' 중심의 자율규제로 도입

* (참여) ESG 평가기관 + 옵저버(금융위, 거래소, 자본연)

(기능)「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제·개정 및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 점검

○ 평가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규율을 활용하여 성장을 유도

○ 다만, 자율규제의 경우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 병행 추진

–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

–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

□ (시행시기)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여, 약 3개월간 시행 유예 (→ '23.9.1일 시행)

(2단계) 진입·행위규제 등 법제화 검토('25년~)

□ 가이던스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 검토

〈 평가기관 규율 법제화 내용(예시) 〉

▸(진입규제) 등록제 도입, 최소한의 인적·물적요건(예: 최소자본금 등) 규율 ▸(행위규제) 내부통제체계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등

참고 1. ESG 평가시장 관련「IOSCO 10대 권고안」

□ IOSCO는 ①감독기관, ②평가기관, ③정보이용자, ④평가기관 및 평가대상기업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안('21.11月)

① 감독기관에 대한 권고
❶ 감독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ESG평가기관과 ESG등급 및 데이터 상품의 사용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② ESG평가기관에 대한 권고
❷ 투명하고 규정된 방법론을 사용하고 가급적 공공에 공개된 정보원에 근거하여 높은 품질의 ESG 등급 및 데이터 상품을 제공한다.
❸ 평가기관의 조직구조, 경영활동,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적·경제적 압력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❹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 관계 등을 회피한다.
❺ ESG평가의 방법론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적인 공개와 투명성을 목표로 한다.
❻ 평가대상기업이 ESG평가와 관련하여 비공개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밀을 유지한다.
③ 정보이용자에 대한 권고
❼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그들이 내부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ESG 등급 및 데이터 상품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④ ESG평가기관 및 평가대상기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권고
❽ 평가기관들은 양자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
❾ 평가기관들은 ESG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대상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❿ ESG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절차를 법과 규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합리화 할 수 있다.

참고 2. 日 금융청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 행동규범」

□ (개요) 日 금융청은 최근 6개 원칙 및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업체 행동규범*을 발표

* 「The Code of Conduct for ESG Evaluation and Data Providers」
('22.12월, 日 Financial Services Agency)

□ (규율체계) 법적 강제력은 없고, 원칙 준수 · 예외 설명(CoE) 방식

○ 금융청은 ESG 평가 ·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하여 행동규범의 준수를 권장하고,

– 이를 따르는 경우 그 취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공표하고 동시에 해당 사실을 금융청에 통지하도록 독려

○ 행동규범을 수용한 기관은 규범의 원칙 · 지침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원칙 · 지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함

○ 금융청은 행동규범을 수락한 기관들의 상황을 6개월마다 공표(데이터 제공에 관한 부분은 1년 단위)

* ESG 평가기관에 대해 '23년 6월까지 수락한 기관의 목록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

□ 주요 내용

제1원칙 품질 보장	▸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ESG 평가 및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절차를 정립하여야 한다.
제2원칙 인적자원개발	▸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ESG 평가 및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전문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3원칙 독립성 보장 및 이해충돌 관리	▸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조직 및 소유구조, 사업, 투자 및 자금조달,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적절히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사업의 독립성,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활동과 상황을 적절히 식별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회피하거나 이해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원칙 투명성 보장	▸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투명성 보장이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이슈임을 인식하고 목적, 접근법, 그리고 평가의 기본 방법론 등 서비스 제공시 철학을 공개적으로 명확화 하여야 한다. ▸ 서비스를 조직하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제5원칙 비밀 유지	▸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습득한 비공개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정립하여야 한다.
제6원칙 평가대상기업 커뮤니케이션	▸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평가과정이 서비스 제공기관과 평가대상기업에 모두 효율적일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습득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기업이 정보의 원천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합리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기관은 해당 이슈에 대하여 적절히 응답하여야 한다.

통 화 명	5월 2일(화)	5월 3일(수)	5월 4일(목)	5월 8일(월)	5월 9일(화)
미 달 러 (USD)	1339.10	1340.20	1339.10	1325.60	1322.70
위 안 화 (CNH)	193.44	192.72	193.30	191.70	191.14
일 본 엔 (JPY)	974.00	982.34	995.21	980.87	979.52
유 로 화 (EUR)	1469.33	1475.56	1481.71	1460.41	1455.04
영 국 파 운 드 (GBP)	1672.54	1671.90	1682.31	1674.03	1668.78
캐 나 다 달 러 (CAD)	988.45	983.74	982.47	990.84	989.27
홍 콩 달 러 (HKD)	170.59	170.73	170.60	168.92	168.53

통 화 명	5월 10일(수)	5월 11일(목)	5월 12일(금)	5월 15일(월)	5월 16일(화)
미 달 러 (USD)	1323.00	1324.20	1320.30	1333.60	1337.80
위 안 화 (CNH)	191.05	191.08	190.44	191.86	192.01
일 본 엔 (JPY)	978.22	987.36	981.85	982.21	983.57
유 로 화 (EUR)	1450.80	1454.70	1441.24	1447.09	1454.79
영 국 파 운 드 (GBP)	1670.35	1672.20	1651.76	1660.07	1675.59
캐 나 다 달 러 (CAD)	988.75	990.17	978.62	983.59	993.47
홍 콩 달 러 (HKD)	168.72	169.08	168.48	170.05	170.67

통 화 명	5월 17일(수)	5월 18일(목)	5월 19일(금)	5월 22일(월)	5월 23일(화)
미 달 러 (USD)	1336.00	1339.40	1332.70	1331.20	1319.10
위 안 화 (CNH)	191.72	191.29	189.72	188.66	187.69
일 본 엔 (JPY)	979.29	973.44	962.00	967.34	951.90
유 로 화 (EUR)	1451.16	1451.64	1436.12	1440.69	1426.01
영 국 파 운 드 (GBP)	1667.46	1672.58	1654.35	1658.48	1640.37
캐 나 다 달 러 (CAD)	991.21	994.99	987.40	986.62	976.60
홍 콩 달 러 (HKD)	170.44	171.03	170.27	170.28	168.50

통 화 명	5월 24일(수)	5월 25일(목)	5월 26일(금)	5월 30일(화)	5월 31일(수)
미 달 러 (USD)	1311.40	1317.50	1323.40	1325.60	1322.20
위 안 화 (CNH)	185.76	186.32	186.93	187.25	186.31
일 본 엔 (JPY)	946.59	946.31	945.72	943.72	945.98
유 로 화 (EUR)	1412.77	1416.97	1419.48	1419.45	1418.99
영 국 파 운 드 (GBP)	1628.76	1629.48	1630.96	1637.91	1640.72
캐 나 다 달 러 (CAD)	971.37	969.36	970.02	975.14	972.17
홍 콩 달 러 (HKD)	167.33	168.27	168.91	169.33	168.77

※ 상기의 기준 · 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